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1.

발 의 자:전용기·허 영·주철현

허종식 · 강준현 · 민병덕

이수진 • 민형배 • 박희승

서미화 · 송옥주 · 안태준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,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.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'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, 임차 또는 개량'을 규정하고 있는데,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(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"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"를 "주택의"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의 주 | 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| | | |
| 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| | | | |
| 사용한다. | | | | |
| 1.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 | 1 | | | |
| 는 융자 | | | | |
| 가. (생 략) | 가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나.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 | 나. <u>주택의</u> | | | |
| <u>택의</u> 구입·임차 또는 개 | | | | |
| 량 | | | | |
| 다. ~ 차. (생 략) | 다. ~ 차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2. ~ 9. (생 략) | 2. ~ 9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② ~ ⑥ (생 략)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 | | |